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53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2201598)	2024.07.05.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6.03.24.) 상정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6.03.31.)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서삼석의원 (2201442)	2024.07.10.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6.03.24.) 상정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6.03.31.)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31.)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4.6.)에서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가 제한되며,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

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다.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 지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에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지정섬 지역 주민에서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정섬으로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을 “사업시행자는”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신고·평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만 해당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6.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8.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3제1항 중 “섬지역 주민의”를 “섬지역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섬의 <u>사업시행자</u>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 -- <u>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u> ----- ----- ----- ----- ----- -----.
② <u>제1항의 사업시행자</u> 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u>사업시행자</u> 는----- ----- ----- ----- ----- ----- -----.
<신 설>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① <u>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u>

<신 설>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의 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신고·평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만 해당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
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
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
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
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
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
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
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6.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허가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

